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공립 교직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에 부합한 사학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준용법 및 준용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 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 후('22.10.18.)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세부 절차 등을 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년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애 판단 절차 간소화(현행 제2조, 제46조의7, 제54조의4 수정)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애판단 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장애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나. 장애등급 결정기준 개선(현행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별표5, 별표6 수정)

2개 이상 장애가 있어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

하여 장애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애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애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함

다.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현행 별표1 수정)

현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유족”의 요건인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교직원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라.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 급여제한 절차 마련 등(현행 제21조의2, 제22조의9 수정, 제64조의2, 별표7 신설)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이를 준용하도록 개정('22.10.18.개정/'23.1.19.시행)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마. 재직기간 합산, 임용 전 복무기간 산입 신청 기한 명확화(현행 제17조의3, 제18조 수정)

재직기간 합산 신청에 관한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한 합산 또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 등에 대한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재직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바. 연금청산에 필요한 이민증빙 서류 현실화(현행 제22조의6 수정)
외국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의 사유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을 충분히 증빙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출국증명서(또는 출국예정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변경함

사. 연금 지급 정지 시의 ‘연금소득 외에 소득월액’ 산정방법 개선(현행 제22조의8 수정)

연금 일부정지 절차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산차액 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아. 자해행위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 완화(현행 제29조 수정)
자해행위에 따른 직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와 자해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함

자. 재활급여 지급 대상 기간 합리화(현행 제39조, 제40조 수정)

재활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이 재활동 또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동이나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차. 퇴직급여·퇴직수당 전화 청구 절차 마련(현행 제53조, 제63조의2 수정)

교직원이 일정 기준 이하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 시 전화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카. 수급자 신상변동 확인을 위한 공단 자료 수집 권한 확대(현행 별표2 수정)

연금급여의 부정수급 예방 및 적정수준의 급여 보장을 위해 수급자의 생존여부 등 신상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신상변동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조문 현행화 등 체계 자구 정비(현행 제22조의2, 제64조, 제65조 수정)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의 분법(18년)되면서, 준용조항 및 개정 내용을 현행법 시행령에 일부 누락 및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2. ~ 9. 2.)

3) 행정규제 : 생 략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실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던 사실”을 “사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애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의 2”를 “제1항”으로 한다.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 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공단”을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공단”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4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3항·제4항”으로,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법 제35조제2항제1호”를 “법 제3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의6제1항 중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를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한다.

제22조의8제2항 중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을 “발생했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 단서”를 “연금준용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의9제3항 중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를 “사망·이혼·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로 한다.

제29조제5항제3호 중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를 “상태와 자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근성(筋性)”을 “근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동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제4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른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제41조의 제목 “(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을 “(장해등급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5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③ 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9급제10호”를 “제9급제10호, 제12급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급제2호(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급 또는 제12급”을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또는 제12급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급제7호·제10호·제11호, 제11급제9호

· 제10호, 제12급제6호·제7호·제9호·제11호”를 “제10급제9호·제12호·제13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의 요구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보상준용법 제30조”로,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 상태의 변경 또는 장해등급의 개정을 인정할 수 있다”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을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46조의7 제3호가목2) 중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확인과 청구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의4 제3호나목2) 중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6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확인과 청구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4조 전단 중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을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 등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 감액) ①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3항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65조 전단 중 “직무상유족연금급여”를 “직무상유족급여”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자	인정기준
가. 배우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법 제2조제2항의 19세 미만인 자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다.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2조제2항의 19세 이상인 자녀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 손자녀· 조부모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별표 2 제1호퍼목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본문 관련”을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4급 제7호 중 “발목발바닥뼈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로 하고, 같은 표 제6급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脊柱)에 극도의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별표 5 제7급 제8호 중 “발목발바닥뼈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

족관절)”로 하고, 같은 급 제12호 중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를 “극도의 흉터가”로 하며, 같은 제7급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별표 5 제8급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바.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별표 5 제9급 제4호 중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을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제9급 제5호 중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을 “고도로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급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애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5 제10급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급에 제2호, 제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5 제11급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7.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

은 사람

라.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5 제12급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급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급 제7호(종전의 제4호) 및 제8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급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기형"을 "변형"으로 하고, 같은 급 제13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급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8. 빗장뼈(쇄골)·복장뼈(흉골)·갈비뼈(늑골)·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13.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5 제13급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급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급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급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급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5 제14급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급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급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급 제4호 중 “팔”을 “두 팔”로, “추한 모양이”를 “경도의 흉터가”로 하고, 같은 급 제5호 중 “다리”를 “두 다리”로, “추한 모양이”를 “경도의 흉터가”로 하며, 같은 급 제9호 중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을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으로 하며, 같은 급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

여 및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6]

2개 부위 이상의 장해 상태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

장해등급(1) \ 장해등급(2)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8	8	8	8	8	7	6	5	4	3	2	1
8	7	7	7	7	7	6	5	4	3	2	1	1
7	6	6	6	6	6	5	5	4	3	2	1	1
6	5	5	5	5	5	4	4	4	3	2	1	1
5	4	4	4	4	4	3	3	3	2	1	1	1
4	3	3	3	3	3	2	2	2	1	1	1	1
3	2	2	2	2	2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 비고

1.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해정도가 제1호에 따라 결정된 종합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장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제64조의2제6항 관련)

대상자	판단기준
부모	1.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유족의 장애등급 및 입증방법)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각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1. ~ 3. (생략)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신설>	제2조(유족의 장애등급 및 입증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③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사실----- ----- ----- ----- ----- ----- ⑤ 공단은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19세

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	----- -----.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1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u>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u>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 ----- ----- ----- ----- ----- ----- 「 <u>해외이주법 시행령</u> 」 제5조제2항에 따른 <u>해외이주신고 확인서</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① (생략)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 ----- ----- ----- ----- ----- ----- <u>발생했던</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u>제4항 단서</u> 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	⑤ ----- <u>연금준용법 제50조</u> ----- -----

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는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 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 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 -----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② (생략)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u>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u>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 ----- ----- ----- <u>사망·이혼·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u>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① ~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① ~

일부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
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
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신 설>

제41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
급”이란 별표 5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
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
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31
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
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
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
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른 승
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1개
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
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제41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

----- 말한다. <단서
삭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
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 따라 종합장
해등급을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
판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② 별표5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
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
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
급을 정한다.

③ 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
(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
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
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
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
급을 정한 후 별표 6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
판정) ① -----

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공단은 <u>보상 준용법 제30조제1항·제2항</u> 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u>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 상태의 변경 또는 장해등급의 개정을 인정할 수 있다.</u>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 <u>보상준용법 제30조</u> ----- ----- ----- ----- ----- ----- ----- -----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u>요구 등</u> 을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u>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u> ----- ---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 ----- ----- ----- ----- -----

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 --
가.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u>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u>	2)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53조(퇴직급여 청구) ① ~ ④ (생략) <신설>	제53조(퇴직급여 청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확인과 청구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의4(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연금준용법 제56조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제54조의4(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류 가. (생략) 나. 연금준용법 제57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생략) 2)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u>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애진단서</u>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1) (현행과 같음) 2)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① (생략) ② 삭제 <신설>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확인 및 청구사실의 확인 등을 위

⑥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다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제6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

직무상유족급여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 - 6496